

의안번호	2219333
의 퇴 인	황운하의원
회 답 일	2026.9.18.
추 계 번호	26D2885

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

【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】

I. 재정수반요인

연번	조·항(조제목)	주요내용	비고
1	부칙 제2조(명예퇴직수당 지급에 관한 적용례)	개정안 제74조의2 제5항 및 제6항의 개정규정을 2015.5.31. 이후부터 2025.6.1.까지 명예퇴직한 사람에게도 적용함 ※개정안 제74조의2 제5항 및 제6항의 내용은 현행 「국가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 규정」(대통령령 제35948호) 제3조 제3항 및 제4항의 내용과 동일한 것으로 시행령의 내용을 법으로 상향 규정하는 것임	의무규정

II. 미첨부 근거 규정 및 상세 사유

1. 근거 규정

연번	조·항(조제목)	미첨부 근거 규정
1	부칙 제2조(명예퇴직수당 지급에 관한 적용례)	제3호: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·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

2. 상세 사유

□ 명예퇴직수당 지급 적용 관련(안 부칙 제2조)

- 현행 「국가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 규정」은 명예퇴직수당 지급대상과 관련하여,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사람과 감사원 등 감사기관과 검찰·경찰 등 수사기관에서 비위 조사 중 또는 수사 중인 사람을 지급대상에서 제외하고, 제외된 사람이 퇴직 후 위법·부당행위를 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지거나 법원의 무죄 판결 등을 받은 경우 명예퇴직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규정함

- 다만, 현행법령의 위 내용은 2025.6.2. 시행으로, 그 이전에 퇴직하여 명예퇴직수당의 지급대상에서 제외된 공무원에게는 적용되지 않음
- 개정안에 따라 2015.5.31. 이후부터 2025.6.1.까지 명예퇴직한 사람도 퇴직 후 위법·부당행위를 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지거나 법원의 무죄 판결 등을 받은 경우 명예퇴직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경우, 수당 지급과 관련한 재정소요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됨
- 명예퇴직수당은 「국가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규정」 제4조 및 [별표 1]에 근거하여 산정됨

명예퇴직수당 지급액 산정표 (제4조 관련)

정년잔여기간별 대상자	산정기준
1. 1년 이상 5년 이내인 사람	퇴직 당시(법 제40조의4제1항제4호에 따라 특별승진하는 사람의 경우에는 특별승진 직전을 말한다. 이하 같다) 월봉급액의 반액×정년잔여월수
2. 5년 초과 10년 이내인 사람	퇴직 당시 월봉급액의 반액× $(60 + \frac{\text{정년잔여월수} - 60}{2})$
3. 10년 초과인 사람	정년잔여기간이 10년인 사람의 금액과 동일한 금액(10년을 초과하는 정년잔여기간에 대해서는 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)

- 명예퇴직수당 산정을 위하여는 2015.5.31. 이후부터 2025.6.1.까지 명예퇴직한 사람 중 퇴직 후 명예퇴직수당 지급제외 사유가 해소된 사람에 대한 현황 자료와 이를 기초로 한 각 대상자의 퇴직 당시 월봉급액 등의 기초 자료가 필요하나, 현재 해당자료가 부존재하고, 또한 지급제외 원인이 해소되었는지에 대한 정보 접근 권한을 각 행정부처 등에서 보유하고 있지 않아 이에 대한 현황자료 파악이 불가능함
- 이와 같은 이유로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를 현 시점에서 추정하기 곤란함

Ⅲ. 부대의견

□ 없음

Ⅳ. 작성자

□ 성명

국회예산정책처	분석관	과장
행정비용추계과	전상욱	김안나

□ 대표연락처

성명	전화번호	이메일 주소
전상욱	02-6788-4673	flyhigh@assembly.go.kr